

원본대조필



원본대조필



정 관

주식회사 마그론

주식회사 마그론 정관

제 1 장 충침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마그론(이)라고 부른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반도체 부품& 소재 제조
 - 전자부품& 소재 제조
 - 무역(반도체 부품& 소재, 전자부품&소재, 기타)
 - 위 각호 부대사업 일체

제3조 (본점 및 지점)

본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안산시 내에 둔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 각지에 지점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magron.co.kr)에 개제한다.

제 2 장 주식과 주권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000 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2,000 주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본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서 전부기명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일십주권·일백주권·일천주권 4종으로 한다.

제9조 (주금납입)

본 회사의 주금은 전액을 불입하여야 한다.

제10조 (명의 개서)

- ① 본 회사의 주식양도에 의하여 명의 개서하고자 할 때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양도이외의 이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회사의 소정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질권의 종류 및 신탁재산의 표시)

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주권의 재발행)

- ① 주권의 분할, 합병,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이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권의 상설로 인하여 재발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이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 날인하고 제권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수료)

제10조 내지 제12조에 의한 청구를 하는 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본 회사의 주주 및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이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 주소와 인감을 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주주명부의 폐쇄)

본 회사는 매 결산종료일 익일부터 동 결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종료일까지 와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일부터 동 총회종료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질권의 등록 및 동 말소를 정지한다.

제 3 장 주주총회

제16조 (소집)

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제17조 (의장)

대표이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 유고시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이를 대행한다.

제18조 (의결권)

주주총회의 의결은 주식 1주에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19조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1조 (의사록작성)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회사에 보존한다.

제 4 장 이사와 감사

제22조 (이사와 감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의 선임)

본 회사의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

제24조 (감사의 선임)

본 회사의 감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5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는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27조 (임원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긴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임을 한다. 그러나 법정원수에 달하고 또한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는 때는 보궐선임을 보류 또는 다음회 정기주주총회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제 5 장 이사회

제28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는 그 이사가 회의일의 7일전에 이사 및 감사에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의 결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제30조(내표이사의 선임)

- ① 당 회사 이사의 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표이사를 둔다.
- ② 이 경우 당 회사의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가 2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31조 (업무집행)

- ① 대표이사는 이 회사의 업무를 통괄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감사는 감사실시의 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 한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 (이사회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상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그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한다.

제34조 (보수와 퇴직금)

- ①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②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의 결의로 정한다

제 6 장 결산

제35조 (영업년도)

본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36조 (재무재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일 6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 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과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이익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③ 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일 1주간 전부터 이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그 중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이익금의 처분)

매정기수익금에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 | |
|--------------------|-------------------------|
| 1. 이익준비금 |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금액의 10분의 1이상 |
| 1. 별도적립금 | 약간 |
| 1. 주주배당금 | 약간 |
| 1. 임직원퇴직급여기금 및 보상금 | 약간 |
| 1. 후기이월금 | 약간 |

제38조 (이익배당)

- ① 이익배당금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지급하며,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배당금은 지급개시한 날부터 1년안에 지급 청구가 없는 때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를 회사의 소득으로 한다.

제 7 장 부칙

제39조 (세칙내규)

본 회사의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시행한다.

제40조 (규정외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결의와 상법, 기타 법령에 따른다.

제4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42조 (1인이사의 경우 경과규정)

- 당 회사의 이사가 1인으로 된 때에는 당 정관 중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은 이를 1인 이사에 적용한다
- 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권한 중 상법상 주주총회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외에는 1인 이사가 단독으로 집행한다.

위 정관은 당 회사에 비치된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1월 1일

주식회사 마그론



대표이사 최경미

